

2022년 우수농식품 패키지 지원사업 사업자 모집 공고문

<신청기한 : 2022년 2월 3일(목) 18시 限>

농식품 수출 중소·중견기업의 수출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우수 농식품 패키지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1월 20일
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

1. 사업개요

□ 사업목적

- 농식품 수출 중소·중견기업의 역량별 필요 서비스에 대한 패키지 지원을 통한 경쟁력 있는 수출기업 육성
 - 기업이 우수농식품 패키지지원 사업메뉴에 대해 배정된 총액에서 자율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선택하여 추진 정산받는 사업

□ 신청자격
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및 「중소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에 따른 농식품 수출 중소·중견기업
 - 최근 3년간('19~ '21년 연속) 농식품 수출실적 보유 필수

□ 지원규모

- 지원업체 : 46개소 내외
- 지원금액 : 업체당 총 사업비의 70~80%(자부담 20~30%) 최대 200백만원
 - 분야별 참가기업의 선정심사 결과에 따라 국고보조금 차등 배정
 - 국고보조 지원비율 : 중소기업(80%), 중견기업(70%)

분야	대상자	규모	지원한도	예산
수출초보패키지	최근 3년간 평균 수출실적 1만~10만불 미만 및 국내 매출 10억이상	12개소 내외	80백만원	960
수출고도화패키지	최근 3년간 평균수출실적10만~500만불	34개소 내외	120백만원	3,300
	최근 3년간 평균수출실적 500만불 이상		200백만원	
계	-	46개소 내외	-	4,260

□ 수출실적

- 수출실적 : 한국관세무역개발원(Trass, 관세청 통계자료) 선적일 기준으로 수출자(화주), 제조자, 수출대행자 중 해당시 수출실적으로 산정됨
- * 최근 3년간 수출실적 기준구간에 따라 자동적으로 지원분야 분리(예시: 10만불 미만의 수출실적업체가 수출고도화패키지 선택시 수출초보패키지로 이관, 10만불 이상의 수출실적업체가 수출초보바우처 선택시 수출고도화패키지로 이관)

□ 사업기간 : 협약체결일로부터 당해연도 11월 30일까지

유의사항

<신청제외 대상>

- 휴·폐업 기업
- 정부, 공공기관, 금융기관의 제재로 인해 제재 대상인 자기업
- * 단, 제재기간 만료 및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은 신청 가능
-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(대기업)
- 수산물 수출업체 * 복수의 수출상품을 취급하고 농식품과 수산식품 혼재시 지원 가능
- 수출통합조직(2년차 이후) 미가입 업체(해당품목 수출시)
- * 통합조직 결성품목 : 파프리카, 버섯류, 딸기, 포도, 배, 토마토
- '18년 이후 우수농식품 패키지 지원사업(구 aT수출바우처) 누적 참여횟수 제한 해당업체
- * 초보패키지 최대 2년, 고도화패키지 최대 3년까지 참여 가능
- '21년 패키지사업 참여업체 중 예산집행율 70% 이하 업체

<중복지원 불가>

- KOTRA, 중기부 등 타기관 수출바우처 사업
- aT 개별 지원사업 : 수출컨설팅, 해외인증, 샘플통관운송, 해외박람회, 개별바이어초청
- aT 통합형 지원사업 : 수출상품화, 글로벌브랜드육성, 수산바우처

□ 사업메뉴

○ 사업메뉴별 세부 지원내용은 [붙임3] 세부정산기준 참고

단계	사업기준	사업메뉴	지원한도 (국고보조)
[1] 수출 초보	① 수출컨설팅	1. 수출컨설팅 * aT POOL	10백만원
		2. 수출전문인력 양성	
	② 제품개발	3. 제품개발(기술도입)	60백만원 *포장디자인개발 30
		4. 포장 디자인 개발	
		5. 지적 재산권 출원	
	③ 수출준비	6. 해외인증 등록 * aT POOL	60백만원 *홍보컨텐츠제작 30
		7. 샘플통관운송	
		8. 홍보 콘텐츠 제작	
[2] 해외 진출	④ 해외진출 (시장개척)	9. 현지 시장조사	50백만원
		10. 개별 박람회 참가	
		11. 개별 바이어 초청	
	⑤ 해외판촉	12. 유통업체 판촉	80백만원
		13. 온라인 판촉	
	[3] 경쟁력 강화	⑥ 수출확대	14. 미디어 홍보
15. 소비자체험홍보			
16. 자유평모 사업			20백만원

* 사업메뉴 중 특정 1개 사업 비중이 총 배정예산의 50%를 초과하여 배정할 수 없음

* 판촉사업(유통업체 및 온라인판촉) 선택시 국고 지원금액의 200% 이상의 수출·입 의무액 부여
(보조금 정산시, 의무액 집행률 대비 정산감액 추진)

2. 신청 방법 및 문의처

- (신청방법) 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(<http://global.at.or.kr>) 온라인 신청
 - 로그인(신규업체 : 회원가입 필요) → 상단메뉴[수출지원사업신청] → 참가기업 자가 역량진단 실시 → 2022년 우수농식품 패키지 지원사업 모집공고 내 [사업신청] 버튼 클릭(기본정보 입력, 신청서 작성 및 업로드)
 - * 온라인 접수 원칙 : 우편 접수, 쿼, 택배, 방문 접수 불가
- (신청기간) 공고일 ~ '22. 2. 3(목) 18시
- (신청서류) 참가신청서 및 증빙서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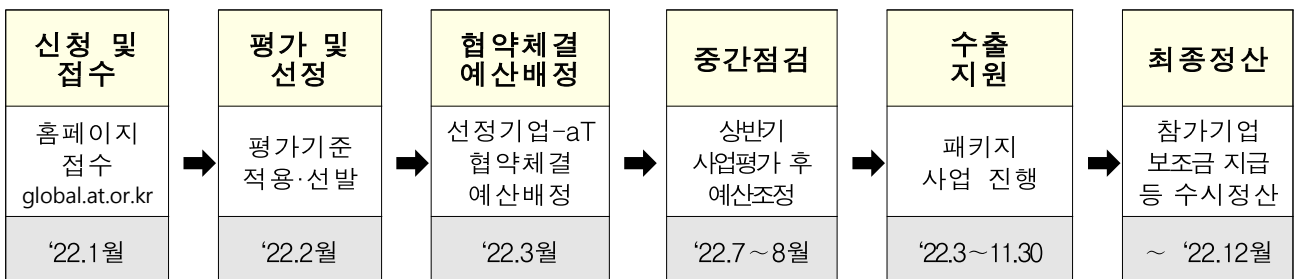
[필수 제출서류]

- ① 사업 참가 신청서 * 첨부 작성양식 및 별첨자료 참조
- ② 중소·중견기업 확인서
- ③ 최근년도 표준재무제표 : 감사보고서, 세무사 또는 회계사 확인 원본
- ④ 무역통계정보 제공동의서(기 제출업체 생략)
- * 제출방법 : global.at.or.kr → 공지사항 → 무역통계제공동의서 온라인 제출 안내 확인

[해당시 필수 제출서류]

- ① (가점) 주재료 국산원료 사용 품목 수출업체 : 품목제조보고서(원산지 및 성분 비율 필수포함)
- ② (가점) 농식품 분야 사회적경제기업(예비포함) 인증서
- ③ 농식품 관련 인증서 사본 1부
- * 6차 산업화, 전통식품 품질인증, 지리적표시등록, 친환경농산물, 할랄인증 등

□ 사업일정



* 세부일정은 각 사업별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

3. 심사 및 결과발표

□ 심사방법 및 항목

- (1차) 서류심사(계량) : 참가신청서 및 증빙서류
 - 수출경쟁력, 재무건전성, 제품역량 등

- (2차) 서면심사(비계량) : 사업계획서 평가
 - 제출된 세부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의 적정성, 제품 경쟁력, 수출 역량, 성과목표의 적정성, 정책부합성 등 종합적으로 평가
 - * 선정위원회 : 농식품 수출 분야 내·외부 전문가로 구성

- (3차) 현장실사 : 서류상 진위여부 확인 및 사업수행 역량 확인
 - * 수출 마스터 활용 추진하되 연속사업 신청자의 경우는 실사 생략 가능
단 실사 필요사유 발생시 실사 추진

- (4차, 최종) 사업 협의회에서 최종 선정 및 예산 배정
 - 참가기업별 예산은 총 사업예산 내에서 선정심사 결과에 따라 차등 배정되며, 참가기업이 제출한 세부사업계획서 상의 예산집행 계획과 달라질 수 있음
 - 예비사업자 후보군을 포함하여 선정하며 규모는 지원업체 수, 신청예산 등을 고려하여 협의회에서 최종 결정되며 잔여예산 발생시 추가 예산 배정 예정
 - 최종선정 업체 대상 자율공모 사업 평가를 통해 사업지원 여부 결정(우수 농식품 패키지 지원사업 참여업체로 선정되더라도, 자율공모 사업은 미선정 될 수 있음)

□ 선정발표 : 이메일을 통해 개별 통보('21년 3월 초)

- 최종 선정 결과 및 사업규모에 따라 예비사업자 후보군을 편성할 수 있음

4. 선정지표

□ 수출초보패키지

○ 계량평가(30점)

평가항목	평가내용	배점	평가점수				
			8만불이상~ 10만불 미만	6만불이상~ 8만불 미만	4만불이상~ 6만불 미만	2만불이상~ 4만불 미만	1만불이상~ 2만불 미만
수출 경쟁력	○ 수출금액(USD) * 최근 3개년('19~'21년) 평균	10	10	8	6	4	2
	○ 수출금액 증가율(%) * 최근 3개년 평균	10	20% 이상	15% 이상	10% 이상	5% 이상	5% 미만
재무 건전성	○ 자기자본비율(%) * 자본총계/자산총계*100	5	50% 이상	30~50% 미만	20~30% 미만	20% 미만	10% 미만
			5	4	3	2	1
제품 역량	○ 농식품 관련 인증 및 특허 획득 여부	5	4개 이상	3개	2개	1개	없음
			5	4	3	2	1
계		30					
총점		-	* 가점(2점) : 신선농산물, 사회적경제기업(예비) * 감점(5점) : 전년도 예산집행률 70~85%이하				

○ 비계량평가(70점) : 평가위원이 업체별 세부사업계획서 서면 평가

평가항목	평가내용	배점	평가점수				
			수	우	미	양	가
사업계획의 적정성	○ 사업목표 타당성 및 명확성 ○ 계획의 구체성, 실천가능성	10	10	8	6	4	2
제품경쟁력	○ 제품의 독자적 경쟁력 ○ 제품의 수출확대 가능성 ○ 목표국 시장적합성	10	10	8	6	4	2
수출역량	○ 해외시장 수출 경력 ○ 수출 전담인력(해외영업팀 등) 보유 ○ 해외 거래선 보유 등 수출 인프라	15	15	12	9	6	3
성과목표	○ 성과목표 도전성, 적정성 및 측정가능 여부 등	15	15	12	9	6	3
정책부합성	○ 수출품목의 국산원료 사용 등 정부 정책방향과의 적합성	10	10	8	6	4	2
예산계획	○ 신청예산의 적정성	10	10	8	6	4	2

□ 수출고도화패키지

○ 계량평가(30점)

평가항목	평가내용	배점	평가점수				
			3백만불 이상	1백만불 이상	50만불 이상	30만불 이상	30만불 미만
수출 경쟁력	○ 수출금액(USD) * 최근 3개년('18~'20년) 평균	10	10	8	6	4	2
	○ 수출금액 증가율(%) * 최근 3개년 평균	10	10	8	6	4	2
재무 건전성	○ 자기자본비율(%) * 자본총계/자산총계*100	5	5	4	3	2	1
	○ 농식품 관련 인증 및 특허 획득 여부	5	5	4	3	2	1
계		30					
총점		-	* 가점(2점) : 신선농산물, 사회적경제기업(예비) * 감점(5점) : 전년도 예산집행률 70~85%이하				

○ 비계량평가(70점) : 평가위원에서 업체별 세부사업계획서 서면 평가

평가항목	평가내용	배점	평가점수				
			수	우	미	양	가
사업계획의 적정성	○ 사업목표 타당성 및 명확성 ○ 계획의 구체성, 실천가능성	10	10	8	6	4	2
제품 경쟁력	○ 제품의 독자적 경쟁력 ○ 제품의 수출확대 가능성 ○ 목표국 시장적합성	10	10	8	6	4	2
수출 역량	○ 해외시장 수출 경력 ○ 수출 전담인력(해외영업팀 등) 보유 ○ 해외 거래선 보유 등 수출 인프라	15	15	12	9	6	3
성과목표	○ 성과목표 도전성, 적정성 및 측정가능 여부 등	15	15	12	9	6	3
정책부합성	○ 수출품목의 국산원료 사용 등 정부 정책방향과의 적합성	10	10	8	6	4	2
예산계획	○ 신청예산의 적정성	10	10	8	6	4	2

- 인증 및 특허는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한 국내외 인증 및 특허 개수로 아래 예시 참조

(국내) ISO, HACCP, GAP, GMP, 전통식품품질인증, 명인, 유기가공식품, 친환경 농산물, 가공식품 KS, 지리적 표시, 유기축산물, 친환경 축산물, 한국할랄, 농업벤처, 농공상용합업체, 6차 산업 인증 등

(해외) 미FDA, FSSC22000, HALAL(JAKIM, MUI, MUIS, IFANCA, HIPVT, WARES 등), 러시아 EAC, 러시아CU, VEGAN, KOSHER, SQF2000, 중국보건식품, Global-GAP, 일본 AS, 미국 USDA Organic 등 유기농 인증 등

(가점) 항목당 1점으로 하되, 최대 2점 한도

항목	점수	세부사항
가점1	1	·신선농산물 수출업체 ·가공식품 시 국산원료 주 사용업체(국내산 50% 이상 시 인정되며, 주원료의 원산지가 표시된 품목제조보고서 제출시 인정) * 단, 원산지 표시가 없을 경우 국산원료 구매증빙(세금계산서, 구매확인서 또는 구매계약서) 또는 기타 주원료가 국산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
가점2	1	·농식품분야 사회적경제기업(예비 포함)

4. 주요일정 및 문의처

- 주요일정(예정)
 - 모집공고(공고일~'22.2.3) → 선정심사 및 예산 배정(2월중) → 협약 체결 및 사업개시(3월초)
 - * 상기 일정은 추진 상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- 담당부서 : 수출전략처 기업육성부
 - 연락처 : 061-931-0862, 0863 / 이메일 : voucher@at.or.kr